

학생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

2026년도 대통령과학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026. 4.

"학생의 성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국가 교육복지 플랫폼"

SI우수장학부

목 차

I. 사업개요	1
II. 주요 사업내용	2
III. 신규 장학생 선발	8
IV.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21
V. 기타	36
VI. 2026년도 추진일정	40
참고 1. 연도별 계속지원기준	42
2. 시·도교육청 추천 가이드라인	43
3.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공통)	44
4.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1학년 학업성적보유자)	57
5.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3학년)	58
6.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학업성적미보유자)	59
7. 학력확인서(북한이탈주민용 예시)	62
8.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63
9. 계속 장학생 관련 서식 자료	64
10.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75
11. 신청인 동의서	82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 이공계 미래인재를 선발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대한민국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비 등을 지원

2. 추진경과

- ☐ '03. 1월: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02. 7월)의 일환으로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신설
*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금,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금
- ☐ '08. 1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07. 7월)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우수 학생 지원사업(이공계) 신설하고, 이공계열 지원 장학사업*을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과학재단)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이공계국가장학생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사업
- ☐ '09. 5월: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과학재단)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 ☐ '13. 3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3. 사업근거

-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 「한국과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4. 추진체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관장
- ☐ 한국장학재단: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 ☐ 대학: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 추천 및 지급, 결과 보고 등 수행
- ☐ 시·도 교육청: 해당 지역 우수인재 심사 및 추천 등 수행

II

주요 사업내용

1. 지원규모

- ☐ 지원인원 및 예산: 502명 내외, 총 8,387백만 원

사업명			예산	선발 및 지원 인원
신규 장학생	국내	일반	1,046백만 원	123명 내외
		지역추천	119 백만 원	14명 내외
	해외		1,200 백만 원	20명 내외
계속 장학생			6,022 백만 원	345명 내외
합 계			8,387 백만 원	502명 내외

2. 지원내용

- ☐ 지원기간: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부터 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지원

구분	내용
공통	■ 최대 수혜 가능 횟수는 정규학기 내 8회까지 가능 - 단, 정규 이수 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 학기까지 지원 ■ 5년제 대학(학과)은 최대 10회(10학기) 수혜 가능 ■ 학 석사 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에 한하여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소속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졸업 유예 등에 따른 추가 기간 지원 불가 ■ 모든 '연간' 기준은 학생 기준임(예시(2학기제 기준): '25-1학기 재학, '25-2학기 휴학, '26-1학기 복학한 경우 '25-1학기'와 '26-1학기'를 '연간'으로 판단)
국내	■ 국내 3학년 유형 선발자는 정규학기 내 최대 4회(5년제 학과는 6회)까지 수혜 가능 ■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수혜 횟수(성적미달 횟수 포함) 포함
해외	■ 3학기제 대학의 경우 연간 3학기 지원, 최대 12학기 지원 가능 ■ 5년제 대학(학과)이면서 3학기제인 경우, 최대 15학기 지원 ■ 해외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부과정 졸업 시 학 석사 학위를 동시 취득이 가능한 경우 총 4년의 범위 내(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5년)에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국내 장학생

-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전액 지원

* 학생회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은 선택경비로 필수경비가 아님

- 직전 학기 취득성적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당해연도 신규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 학기에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등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학업장려비)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학기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직전 학기 취득성적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당해연도 신규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 학기에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사회봉사활동 연 30시간 의무 이행해야 하며, 미제출 시 다음연도 학업장려비 미지급('16년 국내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또는 자원봉사 포털(1365, VMS)에서 확인 가능한 봉사활동
- 이공계열 활동내역(참고9_서식6)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잔여 수혜 학기 학업장려비 미지급('22년 1학년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 장학금 누적 수혜 횟수가 4회(성적미달 횟수 포함시 의무 제출(5년제 학과는 누적 수혜횟수 5회))

-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생활비 수혜가 가능한 자는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마감일 내에 수급권을 득한 자로 한함
- 대학추천 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장학생은 추천(학기 마지막 회차) 마감일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증빙자료 제출
- ※ 대학추천 마감일 기준 1개월 전후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수급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득한 일자가 마감일 이전임을 증빙해야 함)

○ 해외장학생: 연간 최대 미화 5만 불 이내에서 학비, 체재비 지원

- 학비 우선 지원 후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체재비 지원(단, 체재비 지급은 연간 최대 2만 불 이내)
- 한 학기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 미수혜 후 다음 학기 지급 시 연 최대 5만\$ 중 한 학기만큼 차감 후 연간 최대 한도 재산정
- ※ 2학기제 대학교: 연간 최대 장학금 5만\$/2(체재비 지급 한도: 2만\$/2 포함) 지원
- ※ 3학기제 대학교: 연간 최대 장학금 5만\$/3(체재비 지급 한도: 2만\$/3 포함) 지원
- 학생 사정으로 연간 학비 및 체재비 선지급 후 성적 기준 미달 시에는 위의 기준 준용하여 해당 금액만큼 반환해야 함

- (학비) 대학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는 등록금 고지서 항목을 토대로 재단 내부 검토 하에 인정됨
- 소속대학 자체 장학금 등(Grant, Scholarship 등)으로 일부 등록금만 수혜(고지서 상 지급이 확정된 등록금성 장학금 한정하며, 생활비 포함하여 지원 시 제외) 시 재단 내부 검토 후 잔여 등록금 한도 내에서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 가능

- (체재비) 연간 최대 2만 불 이내(국가·도시별 차등 지급, 표1 참고)

· 공무원 체재비의 90% 내에서 정액 지급(학기별 분할 지급)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및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를 참고하여 공무원 체재비의 90% 내외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6.1.2.)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중 '4. 재외직 분야(7급)' 부분 차용하여 재외근무수당 산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개정 2023.1.3.)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상의 장애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혼자 국외에 체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배우자 및 자녀 등이 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 계산한다.

* [별표 3]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 훈련인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85% 지급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개정 2026.1.26.)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 학생 시정으로 연간 체재비 선지급 후 체류지 변경 시에는 차액만큼 반환 필요

▪ 체재비 산정방식

【 표1. 체재비 적용 예시(국가·도시별 최저비용 도시 기준) 】

(단위: USD)

국가	A	B=A*90%	C=B*85%	D=C*12	적용금액(E)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하트나, 델러스)	2,308	2,077	1,765	21,187	20,000
미국(뉴욕, LA,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2,413	2,171	1,845	22,151	20,000
캐나다(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2,066	1,859	1,580	18,967	18,967
호주(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2,168	1,951	1,658	19,907	19,907
영국	2,589	2,330	1,980	23,767	20,000
프랑스	2,528	2,275	1,934	23,213	20,000
이탈리아	2,528	2,275	1,934	23,213	20,000
일본, 요코하마	1,948	1,753	1,490	17,889	17,889
일본(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1,797	1,618	1,375	16,504	16,504
중국(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우한, 다롄)	2,193	1,974	1,678	20,136	20,000
중국(상하이)	2,290	2,061	1,752	21,025	20,000
스위스	4,979	4,481	3,809	45,715	20,000

※ A: 7급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B: A의 90%, C: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85%, D: 연간 지급액

※ 국가별 현지화를 USD로 환산('26.3.3. 기준)하여 적용한 금액(지급 당시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 그 외 국가(지역)에 진학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 산식에 따라 체재비를 산정함

- 단, 온라인 수업 실시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 시에는 연간 최대 체재비 500만원 기준 지급 (국내장학생 연간 학업장려비와 동일)

※ 학기별로 체류지가 상이할 경우 해외 체류 기준(연 최대 2만 달러), 국내 체류 기준(연 최대 500만원)에 따라 각 학기별로 분할하여 체재비 한도 재산정

- 한 학기 중 일부 기간 국내 체류 시 체재비 지급기준

※ 학기 중 귀국(또는 지연 출국) 시, 체재비는 귀국일로부터 해당 학기 잔여 수업일수별 (또는 수업시작일로부터 출국일까지 일수별) 총 반환액을 산정하여 반환(표2 참고)

※ 장학금 지급신청서의 학사일정, 거주계획,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비교 검토

【 표2. 학기 중 국내 체류 기간별 지급 가능 최대 체재비 산정 예시 】

* 2학기제 대학교

국내 체류 기간	15일 미만	15일 이상 45일 미만	45일 이상 75일 미만	75일 이상 105일 미만	105일 이상 135일 미만	135일 이상 165일 미만	165일 이상
최대 체재비	USD10,000	USD8,333 +42만원	USD6,666 +84만원	USD4,999 +126만원	USD3,332 +168만원	USD1,665 +210만원	250만원
산정식	-	$(10,000-10,000/6)+250만원/6$	$(10,000-10,000/6*2)+250만원/6$	$(10,000-10,000/6*3)+250만원/6$	$(10,000-10,000/6*4)+250만원/6$	$(10,000-10,000/6*5)+250만원/6$	-
산정 근거	해외 체류 간주	국내 체류 1개월 간주	국내 체류 2개월 간주	국내 체류 3개월 간주	국내 체류 4개월 간주	국내 체류 5개월 간주	국내 체류 간주

* 3학기제 대학교(※ 단, 마지막 3학기에는 USD6,666, 166만원 기준으로 산정(총합 연간 USD20,000, 500만원))

국내 체류 기간	15일 미만	15일 이상 45일 미만	45일 이상 75일 미만	75일 이상 105일 미만	105일 이상
최대 체재비	USD6,667	USD5,000 +42만원	USD3,333 +84만원	USD1,666 +126만원	167만원
산정식	20,000/3	$(6,667-6,667/4)+167만원/4$	$(6,667-6,667/4*2)+167만원/4*2$	$(6,667-6,667/4*3)+167만원/4*3$	500만원/3
산정 근거	해외 체류 간주	국내 체류 1개월 간주	국내 체류 2개월 간주	국내 체류 3개월 간주	국내 체류 간주

- (출국항공료) 해외 신규 장학생에 한하여 5만\$(연간 최대 지원금액)와 별도로 항공료 편도 1회 실비 지원

- 이코노미기준, 최대 \$2,000 한도 내 1회 지원(왕복 항공권 구매한 경우 왕복항공요금의 절반 지원)
- 출국항공료 지원서류는 장학금 지급신청서류와 함께 접수 기간 내 제출 필수
- 신규 선발연도에 항공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재학 중 1회 지원(미시용 시 소멸)
- 단, 졸업학기 장학금 지급신청서 접수 마감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재학 중이라도 지원 불가
- 한국-체류 국가 출국기준으로 직항 항공권 비용 지원, 직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경유 인정

III

신규 장학생 선발

1. 선발 규모 및 신청 자격

□ **선발 규모:** 157명 내외(국내 1학년 63명 내외, 국내 3학년 60명 내외, 국내 지역 추천(1학년) 14명 내외, 해외 1학년 20명 내외)

○ 지역 대학의 최우수 이공계 대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국내 3학년 선발인원 60명 중 12명은 비수도권 대학생으로 별도 선발

※ 단, 4대 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수도권 대학(원)으로 봄

< (참고) 구분별 선발 인원 >

구분	선발유형				합계
	국내			해외	
	일반		지역추천		
	1학년(신입)	3학년(재학)	1학년(신입)	1학년(신입)	
선발인원	63명	60명	14명	20명	157명

□ **공통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26년도에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부)(이하 '계열')에 입학 예정(확정)인 신입생이거나 국내 3학년 재학 중인 자

※ 2026년 입학확인서(신입생) 및 재학증명서(3학년) 제출로 해당 학기 입학·재학 여부 확인

※ 해외 1학년(신입) 선발유형의 경우, 2025년도에 해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지원 불가

- 대상 대학(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은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계열:**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계열별 구분 및 '26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단,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계열 교육은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로 봄

※ 첨단분야 인재 양성 목표로 신설한 혁신신약학과(약사면허 취득 불가) 등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초등교육학 등 입학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 전공으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반환

- **중복:**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특별법 등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 등 정부·민간으로부터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

※ 단 등록금 학생부담분 및 학업장려비, 생활비만 지원

○ 신청제외 대상

- '25년 대학평가(대학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학년도 학자금지원제한대학(교육부, '25.8.) 제외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의 경우 지원 제외(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지원 제한)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기능

-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제외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고졸후학습자 장학금 등

- 대통령과학장학금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포기, 성적미달 누적 등으로 인한 영구탈락 등)는 유형 관계없이 제외

□ 유형별 신청자격

- 3개 유형(국내(1·3학년), 해외(1학년), 국내 지역추천)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 (1학년 공통) △'24년 12월~'26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이수한 수학·과학 과목 수 또는 이수 단위 합계가 다음 기준 이상인 자(이하 '학업성적 보유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이하 '동등학력자')
 - 학업성적 보유자: 고교 1~3학년까지의 수학, 과학 교과 성적 기준을 충족한 총 과목 수가 10과목 이상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으로 둘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함

구 분	고교 유형	성 적	기 준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 4등급 이내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학점 적용 고교	영재 학교	A- 학점 이상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교육부 비인가학교 혹은 국내 고교 학력 불인정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단, 동등학력자 조건 충족 시 동등학력자로 지원 가능)
- 교육부 인가·국내 고교 학력 인정 외국교육기관* 등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고 기준으로 성적 입력(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한국국제학교 제주,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브랜섬홀아시아,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청리달튼외국인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2023년)에서 국내 고교 학력 인정 과정 이수

※ 성적 기준 충족 예외 인정 사례

- ① 석차 등급이 원칙인 과목이나, 수강인원 부족 등 특수한 이유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 A- 이상 학점
 - ②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A등급
 - ③ 학년 필수과목 전체가 'Pass/Fail'로 표시되어 석차 등급 또는 학점이 없으나 A-이상 학점을 취득한 것을 고교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증빙한 경우
- ①, ②의 경우, 생활기록부 증빙 후 해당 과목 성적 2등급으로 입력 가능
 → ③의 경우, 생활기록부 또는 증빙 문서(과목우수상 등) 제출 후 해당 과목 A- 입력 가능

· 고교 유형별 적용 교과 및 과목(수학 · 과학 교과)

① 일반고 및 과학고: 수학 · 과학 교과 과목 및 이와 관련된 과목

교과명	과목명(예시)
수학	공통수학, 수학10-가, 수학10-나, 이산수학, 실용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미적분 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확률과 통계, 수학의 활용,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등
과학	공통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등
과학에 관한 교과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실험,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컴퓨터과학 I, 컴퓨터과학 II, 전자과학, 환경과학, 과학사,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현대 과학과기술, 과학철학, 정보과학 I, 정보과학 II, 과제연구 I, 과제연구 II, 원서강독, 워크숍 등

※ 재량 교과 중 상기 과목명과 동일한 교과의 경우 포함

※ 상기 과목 이외에 고교 재량 교과 및 기타로 분류된 수학·과학 관련 과목 인정

② 영재학교: 수학 및 과학 교과 필수/심화/선택/특강 과목

③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 舊 대학과목선 이수제), 국제에 관한 교과

(AP: Advanced Placement) 과목 중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성적 인정

※ UP 등 과목 성적 기준: A- 이상 (성적 확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

※ AP과목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과목만 인정되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성적 기준 다름(예시: 일반고는 석차 3등급 이내), 시험 인증식 AP는 인정 안 됨

※ 단, 석차 등급이 'Pass/Fail'로 표시되는 과목은 적용과목에서 제외

- 동등학력자: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고교 내신성적이 없어 성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학업성적 미보유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해외고교 성적증명서(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심층 면접(2단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① 검정고시 출신자: '24년 ~ '25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5년 ~ '26년 해외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

③ 기타: '24년 ~ '25년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북한 이탈주민 등)를 거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등

○ (국내 3학년) '26.3월 기준 학적상 학사정보가 3학년으로 등록된 자로서, 대학교 재학중이며 직전 학기까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7점 이상인 자

- 단, '26년 1학기 3학년 신규 편입생은 현 소속 대학 총 평균 성적이 없음을 고려하여, 증빙자료 제출 후 편입 전 소속 대학의 총 평균 성적 백분위 점수로 신청·심사 가능
- (국내 지역추천) '24. 12월 ~ '26년 시·도 교육감(서울·경기·인천 제외)의 관할 지역 내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이면서,
 - 시·도 교육감(서울·경기·인천 제외)의 관할 지역 내 소재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26년 입학 예정(확정)인 신입생으로서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시·도 교육감은 추천 기준에 따라 관할지역의 '24. 12월 ~ '26년 졸업생(영재 학교·과학고 제외) 중에서 동 지역 내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자를 추천(각 5명)
- * 영재 학교·과학고 졸업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추천 가능
- * 4대 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지역추천 대학에서 제외

- ▶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세종),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경권(대구, 경북, 부산·경남권(부산, 경남, 울산)의 시·도 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소재하지 아니한 대학이라도, 소속 권역(충청권, 호남권 등) 내 대학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추천 가능
- * 관할 지역 내 소재하지 아니한 대학에 대해서는 3명까지 추천 가능
- ▶ 시·도 교육청은 대통령과학장학금 국내(일반)·해외 서류심사 기준에 준하여 교육청별 추천 기준을 수립(추천 기준 가이드라인(안은 참고2 참조)하고,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신청 분야

- (국내 및 해외 1학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 등), 정보 6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분야 1개를 신청
- (국내 3학년) 자연, 공학Ⅰ, 공학Ⅱ 3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분야 1개를 신청

구분	참고
자연	수학, 물리, 천문, 지구과학, 생물, 화학, 환경, 농림·수산, 생활과학 등
공학Ⅰ	전기·전자, 컴퓨터·통신, 소재·재료 등
공학Ⅱ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정밀·에너지, 산업, 화공,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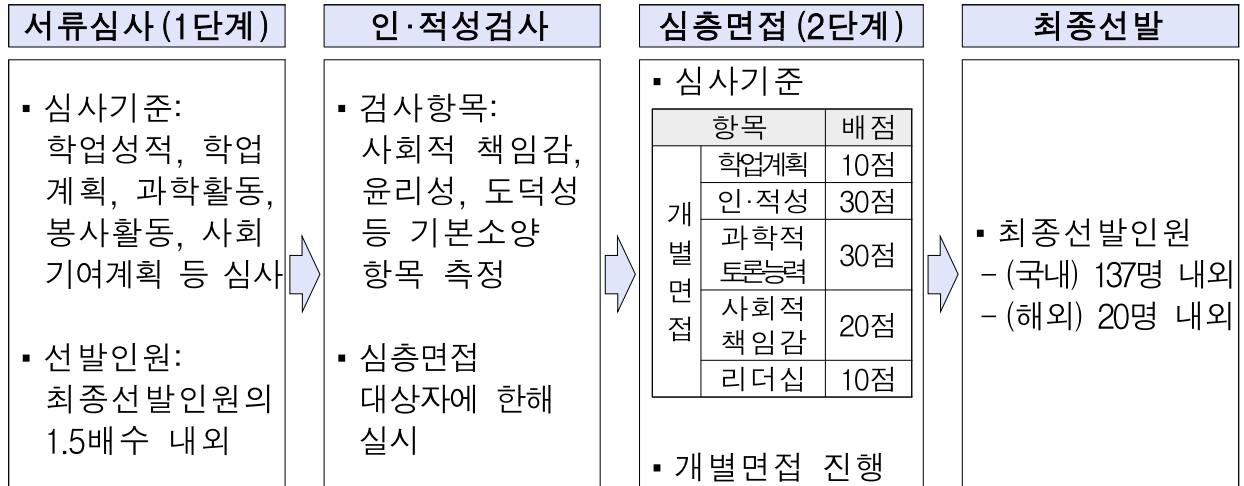
- (국내 지역추천) 분야 구분 없이 통합 신청

※ 본인과 무관한 분야를 신청한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연관된 분야로 신청

2. 선발기준 및 방법 등

□ **선발기준:**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성, 사회적 책임감, 사회기여의식 등 평가

□ **선발절차:** 서류심사(1단계) → 인·적성 검사 → 심층면접(2단계)



- 과학활동:** 수업 중 방과후 동아리·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등 교외 교육·수상 실적 기재 가능
- 사회기여계획:** 본인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소속 공동체 및 사회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기여계획을 기재
- 과학적 토론능력:** 토론 주제에 대해 학생 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

○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지역추천 대상자 중 신청 완료한 학생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고, 미응시할 경우 탈락 처리

- 인·적성 검사 결과를 심층면접(2단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심층면접은 대면으로 진행하되 천재지변, 코로나19(확진자·자가격리자) 등 대면 면접 불가시 재단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자택 또는 지정한 장소에서 PC 등 비대면 영상 개별면접 실시

○ 장학생 선발 예정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장학생을 확정하며, 결원 발생 시 유형별 후보자(20% 내외로 선정) 중에서 선발

* 해외 장학생: 해외 대학 최종합격증명서, 여권, 비자

□ **유형별 선발방법**

○ **국내 1·3학년:** 신청 분야별 상대평가를 통해 분야별 상위 우수자 선발

- 신청 분야별 최종 선발인원은 분야별 신청비율(신청자 중 신청자격 미충족자는 비율 산정 시 제외)에 따라 산정
- 국내 3학년은 비수도권 별도 선발인원을 제외한 수만큼 상위 우수자 선발 후, 비수도권 재학생에 한해 별도 선발인원만큼 차상위 우수자 선발
-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며, 심층면접 대상자 선발 규모는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내외
- 심층면접 대상자 중 종합점수(서류심사, 심층면접 합산) 상위자 순으로 선발
- **해외 1학년: 쏜분야 상대평가로 상위 우수자 선발**
 -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며, 심층면접 대상자 선발 규모는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내외
 - 단, 신청 분야별 최소 1명 이상 선발하고 미신청 분야 발생 시 상대평가를 통해 전체 대상자 중 상위 우수자 선발
 - 심층면접 대상자 중 종합점수(서류심사, 심층면접 합산) 상위자 순으로 선발
- **국내 지역추천: 지역별 상대평가를 통해 지역별 상위 우수자 1명 선발**
 - 서류심사는 면제하며, 심층면접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미추천 지역 발생 시 상대평가를 통해 타지역 추천자 중 상위 우수자 선발
 - 단, 지역추천 대상자 중 신청 완료한 학생을 심층면접 대상자로 확정

□ 단계별 배점 및 선발인원

구분			서류심사						심층면접						최종 선발
			학업 성적	학업 계획	과학 활동	봉사 활동	사회 기여 계획	계	학업 계획	인· 적성	과학 토론 능력	사회적 책임감	리더 십	계	
배점 (점)	1학년	고교 졸업자	15	25	30	15	15	100	10	30	30	20	10	100	200점
		동등 학력자	-	30	40	15	15	100							
		지역 추천	면제												
	3학년	15	25	30	15	15	100								
선발 인원	국내(일반)		최종선발인원의 1.5배 내외						123명 내외						123명 내외
	해외		최종선발인원의 1.5배 내외						20명 내외						20명 내외
	지역추천		70명 내외 추천(서류심사 면제)						14명 내외						14명 내외

□ 동점자 처리 기준

- 종합점수 동점자 발생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차상위계층(2순위), 심층면접 심사 ‘사회적책임감’ 항목 점수 우수자(3순위), 심층면접 심사 ‘인·적성’ 항목 점수 우수자(4순위), 심층면접 심사 점수 우수자(5순위), 서류심사 점수 우수자(6순위, 지역추천 제외) 순으로 선발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3. 세부 선발기준

□ 서류심사 평가기준

- 학업성적(1학년 학업성적보유자: 15점, 1학년 동등학력자: 미적용, 3학년: 15점)

<평가 배점>

평가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적용 비율	상위30%까지	30%초과~40%까지	40%초과~50%까지	50%초과~60%까지	60%초과~70%까지	70%초과~80%까지	80%초과~90%까지	90%초과

- (1학년 학업성적보유자) 신청 분야별로 이수 단위 합계가 높은 순으로 평가 배점을 부여
 - 고교유형·졸업유형별(정규 또는 조기졸업)로 각각 구분하여 신청 시 입력된 이수단위 합계 기준 평가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학교 기준으로 평가
- (1학년 동등학력자) 학업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으로 평가
- (3학년) 신청자격 충족자 중 직전 학기까지 총평균 성적 백분위 점수가 높은 순으로 평가 배점을 부여
- 학업계획(1학년 학업성적보유자: 25점, 1학년 동등학력자: 30점, 3학년: 25점)
 - 지원자의 성장과정 및 가치관, 학업계획 및 과학자로서의 진로 등 과학적 적성과 학업계획 구체성에 대해 평가하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

- 과학활동(1학년 학업성적보유자: 30점, 1학년 동등학력자: 40점, 3학년: 30점)
 - 지원자가 선택하여 기재한 주요 과학활동실적 중(최대 2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실적 1개를 상대평가 하여 우수자 순으로 차등적 평가점수 부여
- 봉사활동(1학년 학업성적보유자: 15점, 1학년 동등학력자: 15점, 3학년: 15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 등 참여 및 자원봉사포털(1365, VMS,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으로 평가
- 사회기여계획(1학년 학업성적보유자: 15점, 1학년 동등학력자: 15점, 3학년: 15점)
 - 본인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사회 기여계획 및 가치관 등을 평가

□ 심층면접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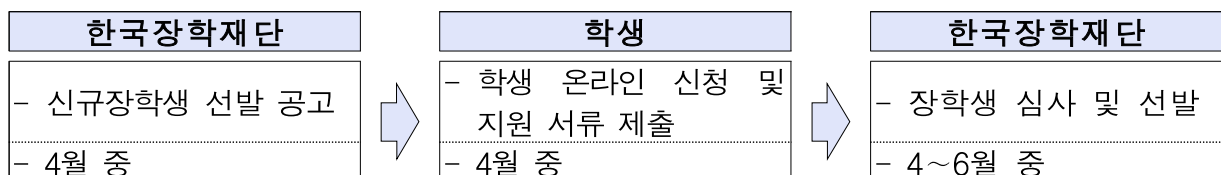
- 지원자의 학업계획, 인·적성, 과학적 토론능력, 사회적 책임감, 리더십 등에 대하여 우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
- ※ 동등학력자의 경우 검정고시,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등 해당 유형 관련 성적이 있으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는 심층면접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 국내 및 해외(일반): 2026. 4월 중(온라인 신청)
 - 지역추천제: 2026. 4월 중(온라인 신청)
 - 각 시·도 교육감 추천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공지하는 기한 내에 추천 학생 개별 신청*
- * 추천 학생 개별 신청은 각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은 자에 한하며 추천받은 자는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신청, 미신청 시 자동 탈락 처리

□ 신청 절차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 (인증서))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 신청하기 메뉴로 접속하여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

※ 지역추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추천자 명단을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한 이후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및 면접 불참 시 탈락 처리됨을 유의

□ 제출서류

- 신청자 전원이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공통서류**와 ①1학년 학업성적보유자, ②1학년 동등 학력 인정자, ③3학년 유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공통서류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과학활동 내역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과학활동내역서」 작성 후 제출(참고3 서식1) ※ 활동 예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수업, 방과후, 동아리, 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PDF
2	인재성장 계획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인재성장계획서」 작성 후 제출(참고3 서식2) ※ 과학자로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기여계획 기재	
3	봉사활동 기술서	○ 「봉사활동기술서」 작성 후 제출(참고3 서식3)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참여 및 자원봉사포털 (1365, VMS,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기재	
4	기타 증빙서류	○ 「과학활동내역서」 및 「봉사활동 기술서」 상 활동 내용 증빙 자료 원본 및 그외 기타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참고3 서식4) ※ 기타 증빙서류에 첨부한 증빙자료(원본)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항목별로 증빙자료(블라인드본) 첨부·제출 필요	PDF, ZIP

-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① (1학년 학업성적보유자) 학교장 또는 교육감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학교장 또는 교육감 추천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 (참고4)작성 후 교육감/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후 온라인 제출 ※ 교육감 추천서는 지역추천 유형만 해당하며 개별 제출이 아닌 교육청에서 제출함	PDF
2	학교생활 기록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온라인 제출	
3	입학확인서 및 재학증명서	○ (국내) 대학 입학확인서* 및 재학증명서** * 입학확인서는 합격통지서, 입학허가서, 합격증 등 입학연도가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소속대학 재학증명서 양식에 입학연도가 기재된 경우 입학 확인서 생략 가능 ○ (해외) 해외 대학 최종합격증명서로 대체 ※ 향후 심층면접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요청	

② (1학년 동등 학력자) 학력 인정 유형에 따라 하단 서류 확인 후 제출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검정고시 출신자	○ 「학업성적 미보유 확인서」 (참고6 서식1)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온라인 제출(정부24에서 발급 가능)	PDF
2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통합되어있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학교 소개서(School Profile) ※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기타 증빙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3	기타 (북한이탈주민 등)	○ 학력확인서(정부24에서 신청가능, 시·군·구청 발급) 등 최종학력 증명서(참고7)	
4	입학확인서 및 재학증명서	○ (국내) 대학 입학확인서* 및 재학증명서** * 입학확인서는 합격통지서, 입학허가서, 합격증 등 입학연도가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소속대학 재학증명서 양식에 입학연도가 기재된 경우 입학확인서 생략 가능 ○ (해외) 향후 해외 대학 최종합격증명서로 대체 ※ 향후 심층면접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요청	

③ (3학년 유형) 지도교수추천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제출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지도교수 추천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 후 온라인 제출(참고4_서식2)	PDF
2	성적증명서	○ 재학 중 모든 학기의 성적을 포함한 성적증명서	
3	재학증명서	○ 대학 재학증명서(신청 학기의 3학년 재학 여부 검토용)	
4	3학년 신규편입자	○ 편입 전 대학 최종 성적증명서 및 졸업(자퇴)증명서 ※ 신청 학기에 3-1학기 신규 편입학생으로 현 소속 대학에서 학업성적이 전무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과목명 입력 기준

- 생활기록부 과목명과 입력하는 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함
 - 예) 생활기록부 과목명이 ‘고급화학 I’인 경우, 유사한 ‘화학’ 과목명 선택이 아닌 ‘고급화학 I’ 과목명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단, 과목명 뒤의 아라비아숫자와 로마숫자는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
 - 예) ‘수학1’ = ‘수학 I’은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
- 학기가 다르지만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한 학기에 1과목으로 처리
 - 예) 1학기에 ‘고급물리’가 2등급, 2학기에 ‘고급물리’가 3등급인 경우(과목명 동일)
→ 성적총족 과목 수는 2과목으로 처리

○ 입학예정대학 입력 기준

- 국내 장학생: 소속 대학 1개 기재
- 해외 장학생: 입학예정대학을 우선순위로 최대 5개까지 필히 기재
 - 신청 시점에서 합격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원대학을 우선순위 순으로 기재
 - 해외 장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입학예정대학 외 대학 입학 시 장학금 지원 불가

○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참고8] 참조)

- 모든 제출 문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가 원칙
 - ※ 한국어와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번역·공증하여 제출
- 졸업(예정)인 학교 소개서(School Profile)를 제출해야 함
- 졸업증명서 및 졸업장, 성적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기타 증빙서류 항목에 첨부)

○ 타 장학금 수혜자 중복수혜 불가

- 학부 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 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 소속대학이 입학 요강에 의거 해당 증서를 교부하였거나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포함(단, 등록금성 장학금에 한하여 중복 수혜 불가하며, 생활비성 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 ※ 해외 유형은 등록금 고지서상 소속 대학 자체 장학금 등(Grant, Scholarship 등)으로 일부 등록금만 수혜(고지서상 지급이 확정된 등록금성 장학금) 시 재단 내부 검토 후 잔여 등록금 한도 내에서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 가능

5. 최종 선발 확정

□ 장학생 선발 예정자

- 장학생 선발 예정자는 심층 면접 대상자 중 신청 분야별 1, 2단계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된 인원으로 함
- 장학생 중 유형별·신청 분야별* 20%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결원 발생 시 후보자 중에서 선발

* 단, 지역추천 및 해외 유형은 신청 분야 통합 20% 범위 내에서 후보자 선정

□ 장학생 최종 확정

- 장학생 선발 예정자 제출서류 검토 및 최종 장학생 확정
 - 장학생 선발 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 (국내 장학생) 소속 대학 변경 시*에만 국내 대학 최종합격증명서
 - * 신규장학생 신청 시 제출한 재학증명서의 소속 대학과 선발 시점의 소속 대학이 변경될 경우, 최종 합격 이후에 반드시 최종 소속 대학의 합격증명서 제출
 - ※ 단, 지역추천 유형은 동일지역 내 대학으로만 변경 가능(4대 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이동 불가)
- (해외 장학생) 해외 대학 최종합격증명서, 여권 및 비자(사본)

-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이 공지한 기한 내에 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함
- 장학생 선발이 되더라도 서류 미제출 등으로 탈락할 경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발

IV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1. 계속 장학생 지원기준

□ 공통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26년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자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계열별 구분 및 '26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단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계열 교육은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로 봄

□ 국내 장학생

○ 등록금 지원기준

- 성적: 직전 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 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심사 학기가 졸업 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대학의 관계 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학업장려비 지원기준: 성적 및 최소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고, 수혜 횟수별 지원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성적 및 최소이수학점 기준

- (성적) 직전 학기 평점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등록금 지원기준과 동일 적용)

- 장학금 수혜 횟수별 지원기준

구분	제출 대상	미제출 시
이공계열 활동내역	- 장학금 수혜 횟수가 정규학기의 1/2을 충족한 계속 장학생	- 잔여 수혜 학기 학업장려비 미지급
사회봉사활동	- 연간(2회) 장학금을 수혜한 계속장학생	- 연간(2회) 학업장려비 미지급

- 제출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이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 ① (이공계열 활동내역) 장학금 수혜 횟수가 정규학기의 1/2*을 충족한 계속 장학생 의무 제출(※ '22년 이후 선발된 국내 1학년(일반 및 지역추천)장학생부터 적용, 참고9_서식6)

- * 4년제(8학기) 대학 기준 장학금 누적 수혜 횟수 4회(성적 미달 횟수 포함) 시, 5년제(10학기)는 누적 수혜 횟수 5회(성적 미달 횟수 포함) 시 의무 제출

- 기한 내 이공계열 활동내역 미제출 시 잔여 수혜학기 학업장려비 미지급

* 이공계열 활동내역 제출 예시('24년 선발 국내장학생(4년제, 졸업이수학기 8학기) 기준)

- 1) '24-1·2학기, '25-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6-1학기 재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4회)
 - '26-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이공계열 활동내역 제출대상(O)
- 2) '24-1·2학기, '25-1학기 장학금 수혜, '25-2학기 장학금 미수혜(성적탈락, 수혜횟수 1회 차감) 후 '26-1학기 재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4회)
 - '26-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이공계열 활동내역 제출대상(O)
- 3) '24-1·2학기, '25-1학기 장학금 수혜 후 '25-2학기 및 '26-1학기 휴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 횟수=3회)
 - '26-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이공계열 활동내역 제출대상 아님(X)
 - (단, 복학학기에 반드시 제출 필요)
- 4) '24-1·2학기, '25-1·2학기 장학금 수혜, '26-1학기 휴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4회)
 - '26-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이공계열 활동내역 제출대상 아님(X)
 - (단, 복학학기에 반드시 제출 필요)

② (사회봉사활동) 계속 지원 심사 시, 장학금 수혜 횟수 2회당 30시간 이상 활동 내역 의무 제출(※ '16년 선발된 국내 장학생부터 적용)

* 선발 유형별 봉사활동내역 제출 대상 예시(※ '16년 선발된 국내 장학생부터 적용)
 (1학년 유형) 4년제 학교(최대 수혜 횟수 8회) 누적 수혜 횟수 2, 4, 6회(성적미달 횟수 포함), 5년제 학교(최대 수혜 횟수 10회) 누적 수혜 횟수 2, 4, 6, 8회(성적미달 횟수 포함인 장학생 의무 제출)
 (3학년 유형) 4년제 학교(최대 수혜 횟수 4회) 누적 수혜 횟수 2회(성적미달 횟수 포함), 5년제 학교(최대 수혜 횟수 6회) 누적 수혜 횟수 2, 4회(성적미달 횟수 포함인 장학생 의무 제출)

- 사회봉사활동 시간 미충족 또는 기한 내 적합한 증빙자료 미제출 시 연간(2회) 학업장려비 미지급
- 봉사활동 실시기간: 계속지원 장학생 심사 학기 기준, 직전 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

※ 학기 개시일: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로 봄

※ 단, 계속지원 장학생 심사 시점 이전 휴학 등에 해당하는 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도 인정(예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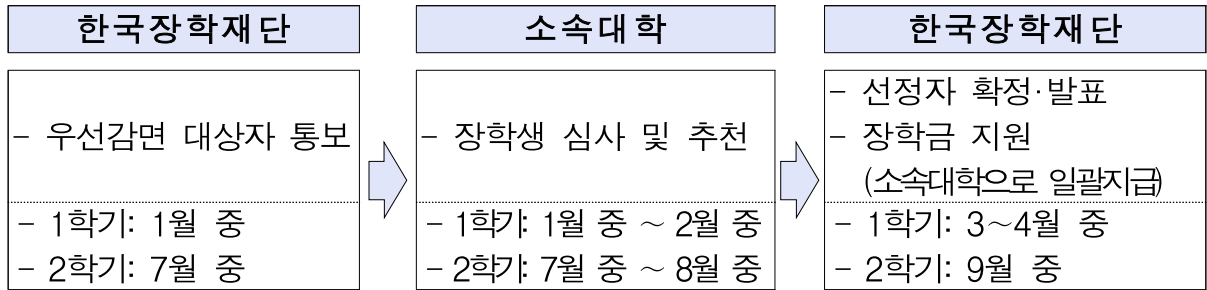
*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기간 예시('25년 선발 국내장학생 기준)
 1) '25-1·2학기 장학금 수혜 및 '26-1학기 재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5.3.1.~2026.2.28.까지
 - '26-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대상(O)
 2) '25-1학기 수혜 후 2학기 휴학, '26-1학기 복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1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5.3.1.~2026.8.31.까지
 - '26-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대상(X)
 - '26-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대상(O)
 3) '25-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6-1학기 휴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5.3.1.~복학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 복학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26-1학기 제출대상X)

- 봉사활동 인정범위: ①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멘토링 등) 참여, ② 자원봉사포털(1365, VMS)을 통해 확인 가능한 봉사활동,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별도 요청하는 지식기부활동*

* 대통령과학장학생에게 별도 요청하는 활동(수기 작성, 간담회 참석(멘토) 등)에 참여하여 지식기부활동 수행 시 5시간 이내의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

* 봉사활동 인정 불가 항목(대가성 장학금이 지급되는 활동 등) 예시
 1) 헌혈, 기부
 2) 국가근로장학금, NH농협대학생재능봉사캠프 재능봉사장학금 등
 - cf)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재능봉사캠프는 단순활동비(멘토링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므로 인정 가능

○ 계속 장학생 대학추천 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해외 장학생

○ 등록금 지원기준

- 성적: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3.0이상/4.0만점, 4.0이상/5.0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상기 기준(성적 및 최소이수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대학의 성적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별도 심사
 - Pass / Fail 과목만 이수한 경우: 학기별 Pass / Fail 총 이수단위 중 80%를 Pass할 경우 지원
 - Class I / Class II.1(60점) / Class II.2 / Class III 유형 성적의 경우: Class II. 1 이상일 경우 지원
 - 평균평점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대학별 성적체계에 따라 최상위학점(A+ 또는 A)을 4.5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 기타

- 계속 지원기준은 성적 취득년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 계속 지원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지원 가능 횟수에 산정

2. 성적 관련 기준

□ 성적 산출 기준('17.1학기 취득 성적부터 적용)

구분	유의사항
성적 (백분위 및 평균평점)	1) 직전학기: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 - 직전학기 평균 및 총평균 성적 산출 시 학칙에 의거하여 계절학기 및 재수강 성적 포함 가능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예시1) A 학생이 계절학기로 수강한 과목이 가, 나 과목 인 경우 ☞ 가, 나 과목 모두 포함(가 또는 나 과목만 포함 불가) 2) 평균평점: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 3) 백분위점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예시) 백분위점수 86.9점인 경우 86으로 처리(계속지원기준 미충족) 4)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성적 산출 시 포함하여 성적 산출
이수학점	1)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 -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성적: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 소속대학 학칙에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직전학기 성적 산출불가시	1)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성적 및 이수학점 입력 예시) 재학생이 직전학기(2학년 1학기)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직전학기(2학년 1학기) 본 성적 입력 -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될 경우, 학사원장에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입력 ※ 해당 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대학) 2)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이수학점 및 성적취득 연도/학기는 해당학기(직전학기)로 입력 → 총 평균 성적 기준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으로 심사 예시) '25-2학기에 전체 Pass/Non Pass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학점을 15학점 취득 ☞ '26-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25/2, [직전학기 성적] 0으로 입력 ※ [관리자포털 계속지원대상자 추천 시] 성적산출여부 'N' 로 입력 시, 총평균 성적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으로 심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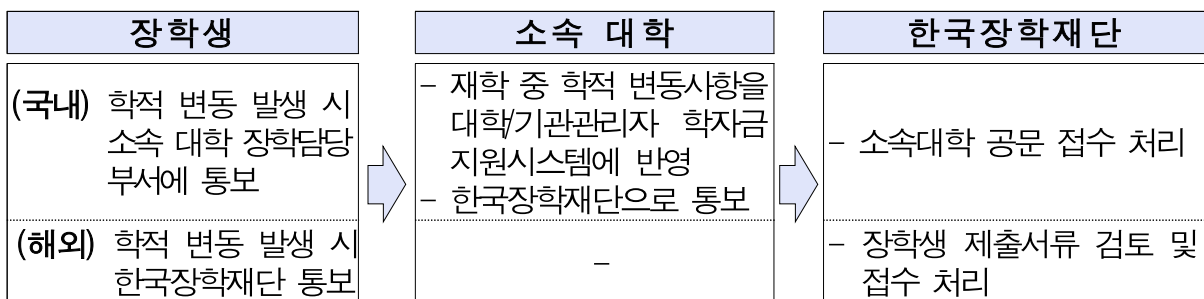
구분	유의사항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불가피한 한시적 사유로 인하여 신입학 후 성적이 산출된 학기가 없는 경우(총평균 성적 심사도 불가능한 경우),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기준 충족 시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소속 대학 공문요청 필요)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3)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성적 산출가능 시) 교환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교환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으로 심사(국내 대학 등록금 납부하고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 예시) '26-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직전학기('25-2학기 교환학기) 성적이 산출된 경우 ⇨ [직전학기 성적] '25-2학기의 교환학기 성적으로 입력,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25/2 으로 입력, [학적상태] '25-2학기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 직전학기의 학적상태가 '재학(교환)' 상태여야 위의 심사기준 적용 가능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성적 산출 불가 시) 성적이 산출된 가장 최근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하되, 최종성적취득연도/학기에도 동일 학기(성적이 산출된 가장 최근학기)를 입력→ 총평균성적으로 심사 예시) '26-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직전학기('25-2학기 교환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 [직전학기 성적] '25-1학기(성적이 산출된 가장 최근 학기)의 성적으로 입력,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25/1, [학적상태] '25-2학기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 직전학기의 학적상태가 '재학(교환)' 상태여야 위의 심사기준 적용 가능 ※ [관리자포털 계속지원대상자 추천 시] 성적산출여부 'Y' 로 입력 시, 총평균 성적으로 심사 진행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은 산출되나 성적 산출 불가 시) 교환학기 이수학점을 입력하고 최종성적취득연도/학기에도 동일학기(교환학기)로 명시(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와 동일) → 총평균성적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으로 심사 예시) '26-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교환학기('25-2학기) 이수학점(12학점)은 나왔으나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25/2 으로 입력, [학적상태] '25-2학기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0으로 입력 ※ 직전학기의 학적상태가 '재학(교환)' 상태여야 위의 심사기준 적용 가능 ※ [관리자포털 계속지원대상자 추천 시] 성적산출여부 'N' 로 입력 시, 총평균 성적 및 직전학기('25-2학기 교환학기) 이수학점으로 심사 진행 ※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내에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구분	유의사항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1) '선택적 패스제*' 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로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3. 학적 변동 등 조치사항

□ 학적 변동 발생 시 처리 절차

- 국내·외 장학생 및 국내대학은 재학 중 학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반드시 통보



- 국내 대학 장학생 학적 변동 처리

- (국내 장학생) 소속 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통보
- (국내 대학) 소속 대학은 재학 중 학적 변동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 시스템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 ※ 단, 학교 변경 시에는 장학생이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변경신청서'(참고9_서식3)를 작성하여 소속대학(변경 전)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해외 대학 장학생 학적 변동 처리

- (해외 장학생) 장학생은 휴학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참고9_서식3)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 복학 시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으나 복학 학기 개시 전 재단에 반드시 통보 요망

□ 학적 변동 유형별 조치 절차: ①전공 변경, ②대학 변경, ③교환학생, ④초과학기, ⑤유급, ⑥휴학, ⑦자퇴·제적

① (전공 변경) 장학생은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동일대학 전공학과(부) 변경 가능

- 국내 대학 조치사항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전과)’ 으로 입력
- 소속대학의 내규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위 변경, 전과로 학제(4년제, 5년제 등)가 변경되는 경우는 재단으로 통보

※ 장학금 2년 초과 수혜자가 학부 재학 기간 중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 할 경우 환수대상에 해당되므로, 전공 변경 시 학사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해외장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참고9_서식3)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이공계 학과로 변경함을 증명하는 문서 첨부)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학과, 초등교육학 등)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학과, 초등교육학 등)된 상태로 선발된 장학생이 진급 시 이공계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등은 전공 변경으로 취급하지 않음

② (대학 변경) 선발연도 및 선발유형에 따라 학교 변경 시에도 계속 지원 가능

- ‘1학년 유형’은 ’20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3학년 유형’은 ’22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학교 변경 가능(개인별 누적 최대 지원 가능 횟수는 기존과 동일)
- ‘1학년 유형’ ’19년도 이전 선발자, ‘3학년 유형’ ’21년도 이전 선발자는 편입 등 소속 학교의 변경은 인정 불가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 및 타대학으로의 이동은 인정 불가함

* 본·분교: 고려대(세종), 연세대(미래), 건국대(글로벌), 한양대(에리카), 동국대(경주)

- 국내 장학생 및 대학 조치사항

- 장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참고9_서식3) 및 관련 서류*를 대학 및 재단으로 제출

* 성적증명서, 학적 증빙자료(자퇴/제적), 입학증명서 등

- 대학은 소속 학교 변경 및 계속장학생 심사 변경요청 공문 재단으로 발송

선발유형	전공 및 학교 변경 기준
국내(일반) 1학년 및 3학년	국내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및 학교 변경 제한 없음
국내(지역추천) 1학년	국내 이공계열 분야 내 전공학과(부) 및 동일 출신 지역 내에서 학교 변경 제한 없음 (단, 4대 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이동 불가)
해외 1학년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및 학교 변경 제한 없음 (단, 국내 대학으로의 변경은 불가)

- ③ (교환학생)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 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단,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성적산출 불가)에는 총 평균성적이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함(단, 최소 이수학점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내에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거나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해외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공계 진학·취업·창업 관련 인턴십만 인정)
- 2010년 2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부터 적용

※ 대학 관계규정(학사규정, 학칙, 지침 등)에 학점 교류 등이 교환학생과 동일하게 학사 처리 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 준하여 지원

- ④ (초과학기) 학점 등 기타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상태로서 정규학기(소속 학제별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하는 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경우
- 초과학기 여부는 등록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록 횟수는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 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포함하여 산출

- 소속 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초과학기)’ 으로 입력
- 해당 학기에 학생의 등록 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⑤ (유급) 유급(특정 연도/학기 성적을 전체 삭제 등)하고 해당 연도 또는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유급)’ 으로 입력
 - 단, 유급하여 다시 이수하는 학기에도 계속지원기준에 대해 심사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 미달 횟수에 포함함
- ※ 예시: 2025년에 2학년 이수 후 1년 유급하여 2026년에 2학년 전체를 다시 이수하는 경우, 2026-1,2학기를 모두 재학(유급)으로 업로드
- ⑥ (휴학) 해당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또는 ‘창업휴학’ 으로 입력
- ⑦ (자퇴·제적)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자퇴 또는 제적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생 자격 상실(영구 탈락)
 - 소속 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자퇴’ 또는 ‘제적’ 으로 입력
 - 단, 정규학기 이수* 후 자퇴 또는 제적하는 경우 해당 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 * 성적 산출 또는 학사일정 상 학기 종료일 이후 자퇴 또는 제적일 경우 정규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봄

☐ 기타

-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Pass/Fail 과목만 이수 등)할 경우 총 평균성적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함

4. 장학금 지급 절차 및 방법

□ 국내 장학생

- 지급 절차: 학기별로 소속 대학에 지급(단, 지급차수는 학기당 최대 2회에 한함)
 - 장학금 확정 및 지급(재단) → 장학금 확인 및 지급(대학) → 장학금 수혜(학생)
 - ※ 대학은 학기당 마지막 회차 추천(심사) 시, 누락된 학생이 없는지 확인 요망
 - ※ 별도의 학생 신청 절차 없이 소속 대학에서 진행
- 지급 및 처리방안
 - 등록금 우선 감면
 - 계속 지원기준을 충족한 계속장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 감면
 - 단, 우선 감면 대상은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전에 계속수혜대상으로 승인 · 확정된 학생에 한하여 실시
 - 장학생의 등록금을 우선감면 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 상에 장학사업명을 명기
 - 등록금 우선 감면 제외
 - 장학생 선발 · 확정이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후 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 이후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 우선 감면 제외
 - 우선 감면을 적용하지 못해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학생 본인 통장에 송금(장학금 지급 시 해당 장학사업명을 명기하여 송금하고 계좌 송금 이외의 현금 지급 등은 불가)
 - 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금 상환(재단 내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상환)
- 기타
 - 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를 제공하는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등)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가능
 - 장학금 지급 시, 재단 내 대출금 및 장학금(예: 국가장학금 I 유형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이 직접 상환/반환 처리 후 대학 지급
 - ※ 대출 및 장학금 상환/반환금, 대학 지급액은 재단의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특별법 등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계속장학생의 경우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 등록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지원금액 산정 후 대학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학장학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수입 처리
- 학기별 장학금 지급 결과보고(대학별 수행) 미수행 시 장학금 지급 보류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 시 해당 학기 장학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전액 반환(이연불가)

※ 단,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대학에서 이연요청(공문 발송)하는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이연 처리 가능

□ 해외 장학생

○ 지급 절차: 개인별 지급(본인 명의 계좌)

- 장학금 신청(학생) → 계속지원기준 검토 및 지급(재단) → 장학금 수혜(학생)

○ 지급 및 처리방안

- 신청방법: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지정 시기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금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이외 메일·우편 신청은 불가함

- 제출서류: 장학금 지급신청서, 진도보고서, 성적표, 등록금 고지서

※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진도보고서는 서식(참고9) 참조

-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검토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지급

○ 기타

- 성적미달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진도보고서 및 성적표 필수 제출

- 3학기제를 적용하는 해외대학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지급

- 장학금은 현지 통화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불가피한 경우(해외계좌 미개설 등)에는 재단 내부 검토 후 국내 외환계좌 지급

☐ 유의사항

-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 학기부터 지원 재개
-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 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 (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5. 장학금 중복지원 상세기준

☐ 기본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 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등록금성 장학금에 한하여 중복 수혜 불가하며, 생활비성 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성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계약학과 계속장학생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등록금 범위에서 학생부담분 및 생활비, 학업장려비만 지원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 중복지원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등록금성),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 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 중복지원 예외 사항 ※

- 1)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등 대가성 장학금
- 2)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에 한하여 중복지원 예외 인정
 - * 소속 대학의 계약학과 산업체 부담금 지급 방식 또는 소속 대학의 학칙 등 자체 판단에 따라 군가산복무지원금을 중복지원 범위에 포함할 경우 등록금 중복 수혜 불가
 - 단, 국방부 군가산복무지원금과 별도로 군 관련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장학금 지원목적 파악 후 제외 여부 판단
- 3)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4) 1) ~ 3)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대통령과학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 및 학업장려비, 생활비에 한해서만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가능

6. 장학생 관리방안

□ 장학생 학사관리 기준

- 재단이 학생의 등록금 납부 여부, 이수학점, 성적 등의 정보를 대학으로부터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 열람 대상자에 재단을 추가하도록 함 (학생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요)

□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기준

○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되는 경우

- 1학년 선발자의 경우, 계속장학생 지원기준을 누적 2회 미달하는 경우
- 3학년 선발자의 경우,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1회 미달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및 장학금 반환되는 경우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학과, 초등교육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자퇴,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단, 질병·상해·천재지변 및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단, '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 장학생 자격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장학생 준수사항(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등) 위반 등으로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장학생 자격 박탈이 결정된 경우
 - ▶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장학생 자격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등 반환

1. 장학증서 및 수혜증명서 발급

- ☐ '26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신규 장학생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장학증서 발급(최초 1회 발급, 재발급 불가)
- ☐ 장학생의 신청에 따라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2. 자기계발 및 성장지원 체계화

- ☐ 장학생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 역량 강화 지원
 - ※ 예시 : 분야별 전문가 성장 멘토링, 연구/창업성과 공유회, 전공별 기업탐방 등 연간 세부 지원내용은 변동 가능
- ☐ 선·후배 장학생 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

3. 국내 장학생 사회봉사활동 의무화

- ☐ 기본적 소양 및 사회적 책임감 함양을 위한 연 30시간 사회봉사활동 의무
 - ※ '16년 신규 선발된 국내 장학생부터 적용(미 이행 시 차년도 학업장려비 미지급)
 - ※ ①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재능봉사캠프(멘토링 등) 참여, ② 자원봉사포털(1365, VMS)을 통해 확인 가능한 봉사활동,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별도 요청하는 지식기부 활동
- ☐ 재능기부형 사회봉사활동 수행 권고
 -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서 자신의 재능·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나눌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 실험보조교사 등 수행 장려

4. 국내 장학생 과학활동 실적 제출 의무화

- ☐ 장학생*은 이공계열 활동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이후 학업 장려비 미지급('22년 국내 1학년 및 지역추천 신규선발자부터 적용)
 -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정규학기의 1/2을 충족한 계속장학생 대상

5.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

□ 「이공계지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25년부터 선발되는 장학생에 이공계 산·학·연 종사 의무를 폐지

○ '24년 이전 선발된 장학생은 개정법 시행일('25.6.21.) 기준 장학생 별 상황에 따라 환수대상 축소 또는 유지 적용

※ 관련: 한국장학재단 기획조정부-333(2025.2.5.) '법률자문 결과 회신'

「이공계지원법」 종전 규정	「이공계지원법」 개정 규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	부칙 제2조(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장려금 환수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 개정법 시행일 기준, 장학금을 수혜 중이거나, 수혜 종료 후 이공계 산·학·연 종사 의무를 유예·이행 중인 경우

→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이공계 의무종사 의무 소멸, 환수대상 아님

② 개정법 시행일 기준, 종사 의무를 불이행하여 환수를 유예·이행 중인 경우

→ 현행법에 따른 의무종사를 위반하여 이미 환수 의무가 발생 하였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도 환수대상이며, 환수의무 존재

□ 주요 내용

○ (수학 중단자) 자퇴 및 제적 등 수학 중단*의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 다만, 질병·상해·천재지변·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전공변경자) '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재학 기간 중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환수대상에 해당

- 환수 금액 산정: 장학금 총 지급액 중 초기 2년의 지급액을 제외하고 산정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	-----------------------------

- 이공계 전공 분야 구분

-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 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첨단분야 인재 양성 목표로 신설한 혁신신약학과(약사면허 취득 불가) 등 이공계 분야로 인정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20.1.1. 시행) 적용 가능

6. 장학생 준수사항

- ☐ 장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열로 진로 설정
-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 변경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보고)
-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 ☐ 장학생은 졸업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답(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해외장학생은 졸업 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필수 제출

- ☐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하여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협조

7. 대학 현장 모니터링

- ☐ 대학 모니터링: 재단에서 대학을 선정하여 시행
- ☐ 점검 내용
 - 장학생 선발 점검: 신규장학생 자체선발 기준 유무 및 준수여부, 재단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 여부 등
 -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수혜 장학 상품명) 등
 -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 ☐ 점검 후 조치사항
 - 실태점검 결과 장학생 부적격자가 도출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 조치 하고 해당 대학은 매회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인 감독 실시

8. 대학 의무사항

- ☐ 대학은 장학생 추천·지급·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계약학과 장학생 관련 정보 또한 재단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 ☐ 대학은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 대학은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해당사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수시로 보고하고, 장학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협조

9. 기타사항

- ☐ 동 지원·관리지침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원·관리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봄
- ☐ 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 문의 및 응답
 - 주소: (41200) 대구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AI우수장학부 ‘대통령과학장학사업 담당자’
 - 전화번호: 1599-2290(대표전화)
 - 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 고객상담 → ‘대통령과학장학금’

VI

2026년도 추진일정

1. 신규 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사업계획 수립 및 선발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26. 3~4월
신청 및 접수	○ 한국장학재단으로 개별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역추천자의 경우, 사·도교육감 추천된 자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학생	'26. 4월
1단계 심사	○ 서류심사 준비 및 진행 (국내 및 해외) ※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인·적성 검사 실시	한국장학재단 심사위원	'26. 5월
2단계 심사	○ 심층면접(국내 및 해외)	한국장학재단 심사위원	'26. 5~6월
최종선발	○ 최종선발(국내 및 해외)	한국장학재단	'26. 6월
선 정	○ 최종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통보(신청자 개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26. 6월
지 원	○ 장학금 지급(학기별)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국내 1학년, 3학년) '26. 6~7월 (해외) '26. 9~10월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조정 가능

2. 계속장학생 지원

			1학기	2학기
사업공고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 장학생 신청안내(학생·대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26. 1~2월	'26. 7월 중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 계속장학생(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한국장학재단	'26. 1~2월	'26. 7월 중
소속대학 확인 및 추천	○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및 학적 확인 ○ 대학 추천	소속대학	'26. 1~2월	'26. 7~8월
우선감면 처리	○ 계속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소속대학	'26. 1~2월	'26. 7~8월
심 사	○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26. 2월 중	'26. 7~8월
지급	○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26. 3~4월	'26. 8~9월
결과보고	○ 학기별 지원 결과 제출 (소속대학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추가지급 신청 및 반납 학적 변동 등 최종 지급 결과보고 제출	소속대학	'26. 8월 중	'26. 12월 중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참고 1

연도별 계속지원기준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이후
등록금	3.0이상/ 4.5만점 또는 2.7이상/ 4.3만점	국내장학생	국내장학생		국내장학생	국내장학생
		3.25이상/4.5만점 또는 3.0이상/4.3만점	3.5이상/4.5만점 또는 3.3이상/4.3만점		B ⁺ 수준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
		B ⁺ 또는 82.5점 이상	B ⁺ 또는 85점 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3.0이상/4.0만점	B ⁺ 수준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3.0이상/4.0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3.0이상/4.0만점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4.0이상/5.0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기준 없음			*국내장학생의 경우,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최소 3학점 이상적용) *’10년도 1학기 취득성적으로 2학기부터 적용		
학업장려비	해당 없음	직전학기 성적 A ⁺ 이상 (’09년 1학기 성적)	4.0이상/4.5만점 또는 3.7이상/4.3만점	A ⁰ 수준,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0점 이상)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 이상	
			* ’09년부터 국내 장학생에 한하여 학업장려비 지원 제도 신설 (단, ’09년 선발 장학생 이후에만 적용) * 입학학기는 전원 지급, 2학기부터는 계속지원기준 충족자에 한함 * 사회봉사활동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당 30시간 이상 의무 제출해야 하며, 미 충족시 학업장려비 미지급(2회) ※ ’16년 국내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이공계열 활동내역 정규학기 1/2에 해당하면 의무 제출해야 하며, 미 충족시 잔여 학기 학업장려비 미지급) ※ ’22년 국내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기준 없음		*국내장학생의 경우,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10년도 1학기 취득성적으로 2학기부터 적용			
생활비	* 학기별 계속지원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09년도 신규장학생부터)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 생활비 지원					
교재비	* ’08년도 교재비 지급제도 신설하여 ’09년 1학기까지 기존장학생에 한하여 시행 후 폐지 - 국내장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 해외장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균 A이상(90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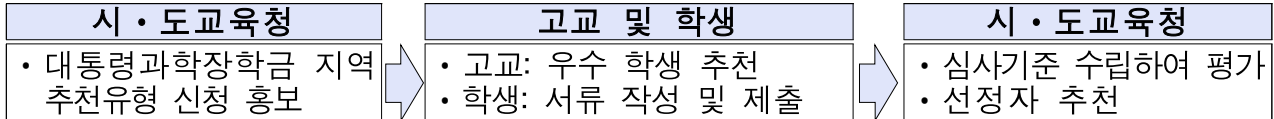
※ 성적적용 시점

- '07년도 성적기준은 '07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08년도 성적기준은 '08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09년도 성적기준은 '09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0년도 성적기준은 '10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1년도 성적기준은 '11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2년 이후 성적기준은 '12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참고 2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역추천] 시·도교육청 추천 가이드라인(안)

1. 추천 절차



2. 심사 내용 및 방법

- 심사 내용: 신청자가 제출한 학업성적, 과학활동, 지역사회 환원 등의 우수성 심사
- 심사 방법: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시·도교육청별 자체 심사기준 수립하여 선발(합의제 심사)

○ **심사요소**(100점 만점): 학업성적, 학업계획, 과학활동, 봉사활동, 사회기여계획

구분	학업성적	학업계획	과학활동	봉사활동	사회기여계획	계
지역추천유형	15점	25점	30점	15점	15점	100점

※ 심사 시 추천된 학생의 개인정보(출신 고교, 가족관계 등)를 비공개하여 진행

- **(학업성적)** 신청 분야별로 신청 자격(성적)을 충족하는 과목 이수단위 합계가 높은 순으로 평가 배점 적용 비율에 의거하여 배점 차등적 부여
- **(학업계획)** 지원자의 성장과정 및 가치관, 학업계획 및 과학자로서의 진로 등 과학적 적성과 학업계획 구체성에 대해 평가하되,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과학적 적성, 학업계획의 구체성)
- **(과학활동)** 지원자가 선택하여 기재한 주요 과학활동실적 중(최대 2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실적 1개를 상대평가 하여 우수자 순으로 차등적 평가점수 부여(수준별: 국제, 국내, 지역, 교내)
- **(봉사활동)**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 등 참여 및 자원봉사포털(1365, VMS,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으로 평가
- **(사회기여계획)** 본인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지역사회에 기여 계획을 평가

○ **심사위원 구성**

- **(인원)** 4~6명 내외
- **(구성 방법)** 분야별 전문가, 장학사, 교사 등 시·도교육청별 구성

※ 학생 추천이 있는 고교의 소속 교사 및 학생의 활동실적과 관련된 전문가 등 제외

○ **심사 결과 산출:** 심사위원 별로 배정된 과제를 전담 검토 후 심사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과제별 평가점수와 의견서를 위원장이 작성

※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 제외(단,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일반, 생계급여 조건부,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추천 가능)

※ 4대 과기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지역추천 대학에서 제외

참고 3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공통)

대통령과학장학생 신청 시 지원자는 <서식1>~<서식4>에 해당하는 지원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식은 ①과학활동내역서(블라인드한 증빙자료 포함), ②인재성장계획서, ③봉사활동기술서(블라인드한 증빙자료 포함)이며, 서식 ④는 ①, ③에 기재한 내역·실적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기타 증빙자료 제출(원본)입니다.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블라인드 평가 사항 등을 숙지 후 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대통령과학장학생 과학활동내역서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 본 설명박스는 작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함으로 제출 시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블라인드 평가

- 평가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신청자는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성명, 가족관계, 지역, 소속학교, 지도교수 성함 등)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신청자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블라인드 작성의 핵심은,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지원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이야기”, “지원자의 고유한 과학활동내역을 제외한 출신 지역, 혈연, 학연, 지연 등을 통해 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 표현으로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블라인드 위반처리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블라인드 위반 예시
성명	(예)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 작성금지
출신지역	. 출신 지역을 밝히거나 출신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 서울 소재 한국대에서~/ 대구에서 나고 자라~ ⇒ 작성금지
가족관계	. 가족관계를 밝히거나 가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 공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00연구소에 재직하시는 부모님 ⇒ 작성금지
출신학교	. 출신학교를 밝히거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지도교수명, 학교위치, 상징물, 축제명, 동아리명 등) (예) 대학시절 한국대총장상을 받았으며 ⇒ 작성금지(수정: 대학시절 총장상을 받았으며) (예) 출신학교 특정 가능한 동아리명(한국대 AI동아리) ⇒ 블라인드 처리(수정: AI동아리) (예) 홍길동 교수님의 지도 하에 ⇒ 블라인드 처리(수정: 교수님의 지도 하에)
성별	. 성별을 밝히거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 군대 의무복무, 00병, 카투사, 병역 연기, 예비군, 전역 후 복학 등 ⇒ 작성금지 (예) 집안의 맏형으로서(장녀로서) ⇒ 작성금지(수정: 집안의 맏이로서)
기타	그 외 간접적 표현으로 인적사항이 상정되는 경우 블라인드 위반

2.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자는 블라인드 평가임을 유의하시어, 「과학활동내역서」 작성 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는 경우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본인 이름, 00고등학교, 00대학교, 000총장, 000학교장, 000교수, 출신지역 등
- **(1학년 분야) 고등학교 재학 중** 수업방과 후 동아리·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 등), 정보 6개 분야 중 가장 연관된 분야 1개만 선택
- **(3학년 분야) 대학교 재학 중** 수업방과 후 동아리·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 자연, 공학Ⅰ, 공학Ⅱ 3개 분야 중 가장 연관된 분야 1개만 선택
- **신청 시 작성 가이드라인**
 - ① 분량은 **최대 5장 이내**(5장을 초과한 페이지는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작성하고, 증빙서류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 ※ 증빙서류는 분량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서식4>기타 증빙서류(원본)' 분량 한도가 있으므로 최대 분량을 준수하여 제출
- 예) 과학활동내역서 분량 = 1. 과학활동내역과 2. 주요활동내용 항목을 최대 5장 이내 작성, 3. 증빙서류는 분량에 포함 X
- ※ 과학활동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서식4> 기타 증빙서류(원본)'에 제출한 증빙내역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요망
- 예) 과학활동내역서에 대한 증빙서류(수상내역, 상장 등)에서 블라인드 평가에 위반되는 내역(이름, 지역, 학교명 등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을 가림 처리하여 첨부

증빙서류(상장, 메달 등) 원본 예시	증빙서류(상장, 메달 등) 블라인드 처리 예시
제 2026-00호 상 장 자연과학 분야 한국대학교 최우수상 김 장 학 귀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최한 「 대구광역시 대통령과학장학금 공모전」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1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홍길동	제 2026-00호 상 장 자연과학 분야 [블라인드] 학교 최우수상 [블라인드] 귀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최한 「 [블라인드] 대통령과학장학금 공모전」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1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홍길동
- <서식4>기타 증빙서류(원본)에 첨부	- <서식1>-'3. 과학활동내역 증빙자료'에 첨부 ※ 반드시 <서식4>기타 증빙서류(원본)과 동일한 서류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 위 예시는 참고용이며, 반드시 블라인드 평가 유의사항을 숙지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문 소재목은 13 point, 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되, 줄 간격은 조정 가능

③ <서식1> 본문에 도표, 사진 등 과학활동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하나, **블라인드 작성 기준 반드시 준수**

④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1장에 1P)하여 제출하며, 모아찍기 등(1장에 2~4P) 불가(제출 시 제출양식 미비로 간주)

작성 내용에 허위·거짓이 밝혀질 경우에는 선발 이후라도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 향후 장학생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활동내역

※ 파란색 글귀는 안내사항으로 모두 삭제 후 제출

※ 주요과학활동 최대 2개, 기타과학활동 최대 5개로 기재(중요도 순으로 기재)

- 1줄에 2개의 활동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초과 활동 및 증빙 미비 활동은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국내·외구분: 국제, 국내, 지역, 교내 등 규모 기재

※ 수상내용 작성 시 과학 활동명/대회명 및 비고 등에 1위,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명 기재

※ 주관기관이 소속 학교일 경우는 구체적 명칭(00고등학교 등)이 아닌 '교내'로 지칭

구분	연번	국내외 구분	과학활동명/대회명 (간략한 활동내용 기재)	활동일/수상일 (기간)	주관기관	비고
주요	1					
	2					
기타	1					
	2					
	3					
	4					
	5					

2. 주요 활동 내용 ※ 1.과학활동내역 중 주요과학활동에 기재한 내용 작성(최대 2건)

일련번호	1	수상/기타 중 선택 기재 (수상이력이 있을 경우, 주요내용 표양식 기재 필수)	분야	작성요령 참고하여 1개 분야만 선택 기재
제목	과학활동명/대회명을 포함한 제목 작성			
☐ 과학 활동의 창의성(독창성) < 과학 활동의 아이디어 창의성 및 독창성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주요 내용

< 과학 활동 방법 및 내용 등 과학 활동의 우수성이 부각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

★작성요령★

- 「수상」 내역의 경우, 아래 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고 기타일 경우 아래 표 삭제 후 작성

수상연월일	참가자			대회명	수상명	국내외 구분	수준
	단독/공동 여부	본인역할	팀원수				
년 월 일		(리더/팀원 등)	(단독일 경우 미기재)				

※ 수상명: 대통령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명 기재

※ 단, 대회명 또는 수상명에 소속 학교 명칭이 들어갈 경우, 구체적 명칭이 아닌 교내로 지칭

※ 국내외구분: 국제, 국내, 지역, 교내 등 규모 기재

※ 수준: 대회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
(예시: 대회 규모(전체 참가자 수 등), 예선 및 본선 여부 기재)

※ 국제올림픽아드(이공계열) 등 교육·수상실적 포함 기재

☐ 과학 활동의 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 명시한 과학활동의 향후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전공 및 진로와의 연계성

< 본인의 전공과의 연계성, 향후 진로와의 연계성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기타

<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

3. 과학활동내역 증빙자료(블라인드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첨부)

※ '<서식4> 기타 증빙서류(원본)'에 제출한 증빙내역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요망
 ※ 3. 과학활동내역 증빙은 최대 8P 이내를 권장(기타 증빙서류(원본) 최대 분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출)

- <서식4> 기타 증빙서류(원본) 양식에서 학교명, 본인 이름, 지역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 주관기관(발행처)이 소속 학교일 경우는 발행처(빨간색 박스 부분 포함) 블라인드 처리 필수
- 증빙자료 블라인드처리 예시는 아래를 참고

□ 주요과학활동 일련번호-1에 대한 증빙

서류명	한국장학재단 최우수 상장			증빙번호	1
증빙목적	주요과학활동 1	발행처	한국장학재단	발행년도	2026

제 2026-00.호

상 장

자연과학 분야 대 학교
최 우수 상

귀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최한 「
대통령과학장학금 공모전」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1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홍길동

□ 주요과학활동 일련번호-2에 대한 증빙

□ 기타과학활동 일련번호-1에 대한 증빙

<서식2>

대통령과학장학생 인재성장계획서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 본 설명박스는 작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함으로 제출 시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블라인드 평가

- 평가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신청자는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성명, 가족관계, 지역, 소속학교, 지도교수 성함 등)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신청자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블라인드 작성의 핵심은,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지원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이야기” 등 “출신 지역, 혈연, 학연, 지연 등을 통해 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 표현으로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블라인드 위반처리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블라인드 위반 예시
성명	(예)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 작성금지
출신지역	. 출신 지역을 밝히거나 출신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 서울 소재 한국대에서~/ 대구에서 나고 자라~ ⇒ 작성금지
가족관계	. 가족관계를 밝히거나 가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 공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00연구소에 재직하시는 부모님 ⇒ 작성금지
출신학교	. 출신학교를 밝히거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지도교수명, 학교위치, 상징물, 축제명, 동아리명 등) (예) 대학시절 한국대총장상을 받았으며 ⇒ 작성금지(수정: 대학시절 총장상을 받았으며) (예) 출신학교 특정 가능한 동아리명(한국대 AI동아리) ⇒ 블라인드 처리(수정: AI동아리) (예) 홍길동 교수님의 지도 하에 ⇒ 블라인드 처리(수정: 교수님의 지도 하에)
성별	. 성별을 밝히거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 군대 의무복무, 00병, 카투사, 병역 연기, 예비군, 전역 후 복학 등 ⇒ 작성금지 (예) 집안의 맏형으로서(장녀로서) ⇒ 작성금지(수정: 집안의 맏이로서)
기타	그 외 간접적 표현으로 인적사항이 상정되는 경우 블라인드 위반

2.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자는 블라인드 평가임을 유의하시어, 「인재성장계획서」 작성 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는 경우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본인 이름, 00고등학교, 00대학교, 000총장, 000학교장, 000교수, 출신지역 등
- 「과학활동내역서」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단순 수상내역, 뛰어난 업적 등을 추가 요구하는 바가 아님을 유의하여 **본인의 가치관, 꿈, 노력, 계획을 진솔하게 기재**
- **신청 시 작성 가이드라인**
 - ① 분량은 **최대 2장 이내로 작성**(2장 초과된 페이지는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하며, 소제목은 13 point, 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되,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②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1장에 1P)하여 제출**하며, 모아찍기 등(1장에 2~4P) 불가(**제출 시 제출양식 미비로 간주**)

작성 내용에 허위·거짓이 밝혀질 경우에는 선발 이후라도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 향후 장학생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파란색 글귀는 안내사항으로 모두 삭제 후 제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 진로 및 분야 등 중요한 결정 내용과 결정을 하게 된 동기와 계기 등 - 신청자의 인생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 이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대학에서의 학업 계획
- 본인의 관심분야, 목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과학자로서의 진로 및 비전
- 과학자로서의 장래의 진로와 포부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사회 기여 관련 본인의 가치관
- 본인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을 기술
사회 기여 계획
- 본인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소속 공동체 및 사회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기여계획을 기재

<서식3>

봉사활동기술서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 본 설명박스는 작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함으로 제출 시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블라인드 평가

- 평가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신청자는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성명, 가족관계, 지역, 소속학교, 지도교수 성함 등)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신청자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블라인드 작성의 핵심은,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지원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이야기”, “출신 지역, 혈연, 학연, 지연 등을 통해 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 표현으로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블라인드 위반처리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블라인드 위반 예시
성명	(예)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 작성금지
출신지역	. 출신 지역을 밝히거나 출신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 서울 소재 한국대에서~/ 대구에서 나고 자라~ ⇒ 작성금지
가족관계	. 가족관계를 밝히거나 가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 공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00연구소에 재직하시는 부모님 ⇒ 작성금지
출신학교	. 출신학교를 밝히거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지도교수명, 학교위치, 상징물, 축제명, 동아리명 등) (예) 대학시절 한국대총장상을 받았으며 ⇒ 작성금지(수정: 대학시절 총장상을 받았으며) (예) 출신학교 특정 가능한 동아리명(한국대 AI동아리) ⇒ 블라인드 처리(수정: AI동아리) (예) 홍길동 교수님의 지도 하에 ⇒ 블라인드 처리(수정: 교수님의 지도 하에)
성별	. 성별을 밝히거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 군대 의무복무, 00병, 카투사, 병역 연기, 예비군, 전역 후 복학 등 ⇒ 작성금지 (예) 집안의 맏형으로서(장녀로서) ⇒ 작성금지(수정: 집안의 맏이로서)
기타	그 외 간접적 표현으로 인적사항이 상정되는 경우 블라인드 위반

2.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자는 블라인드 평가임을 유의하시어, 「봉사활동기술서」 작성 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는 경우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본인 이름, 00고등학교, 00대학교, 000총장, 000학교장, 000교수, 출신지역 등
- 주관기관이 소속 학교일 경우는 구체적 명칭이 아닌 교내 혹은 00동아리 등으로 지칭
- 봉사활동 증빙과 봉사 시간 및 기간이 상이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재 요망
- (1학년 분야) **고등학교 재학 중** 봉사활동에 한정, 이외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3학년 분야) **대학교 재학 중** 봉사활동에 한정, 이외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시 작성 가이드라인**
 - ① 분량은 **최대 1장 이내**(1장을 초과한 페이지는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작성하고, 증빙서류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 ※ 증빙서류는 분량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서식4>기타 증빙서류(원본)’ 분량 한도가 있으므로 **최대 분량을 준수하여 제출**
 - 예) 봉사활동기술서 분량 = 1. 봉사활동내역, 2. 주요활동내용 최대 1장 이내 작성, 3. 증빙서류는 분량에 포함 X
 - ※ **봉사활동기술서에 대한 증빙서류는 ‘<서식4> 기타 증빙서류(원본)’에 제출한 증빙내역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요망**
 - 예) 봉사활동기술서에 대한 증빙서류(1365, VMS, 생활기록부 등에서 블라인드 평가에 위반되는 내역(이름, 지역, 학교명 등)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림 처리하여 첨부
 -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증빙(생활기록부, VMS 증빙 불가 시)은 학교 또는 학교장, 교사, 봉사기관과 공식적으로 주고 받은 이메일(서명 포함)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단, 졸업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봉사활동 내역만 인정됨)**
 - 예) 졸업예정일: 2026년 6월 3일 → 봉사활동 인정기간: 2023년 6월 3일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 ※ **국내·해외 고등학교 과정이 4년인 경우(국제고 포함), 졸업(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봉사활동 내역만 인정됨**
 - ※ **비공식적인 증빙은 인정되지 않으며, 작성 시 심사에서 제외 또는 감점될 수 있음**

증빙서류(1365, vms 등) 원본 예시	증빙서류(1365, vms 등) 블라인드 처리 예시
- <서식4> 기타 증빙서류(원본)에 첨부	- <서식3>3. 봉사활동 내역 증빙에 첨부 ※ 반드시 <서식4> 기타 증빙서류(원본)과 동일한 서류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 위 예시는 참고용이며, 반드시 블라인드 평가 유의사항을 숙지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문 소재목은 13 point, 내용은 11point로 작성하되, 줄 간격은 조정 가능

④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1장에 1P)하여 제출하며, 모아찍기 등(1장에 2~4P) 불가(제출 시 제출양식 미비로 간주)

작성 내용에 허위·거짓이 밝혀질 경우에는 선발 이후라도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 향후 장학생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파란색 글귀는 안내사항으로 모두 삭제 후 제출)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 등 참여 및 자원봉사포털(1365, VMS,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봉사활동 기술

- 이외 민간재단 등에서 발급된 봉사활동 내역은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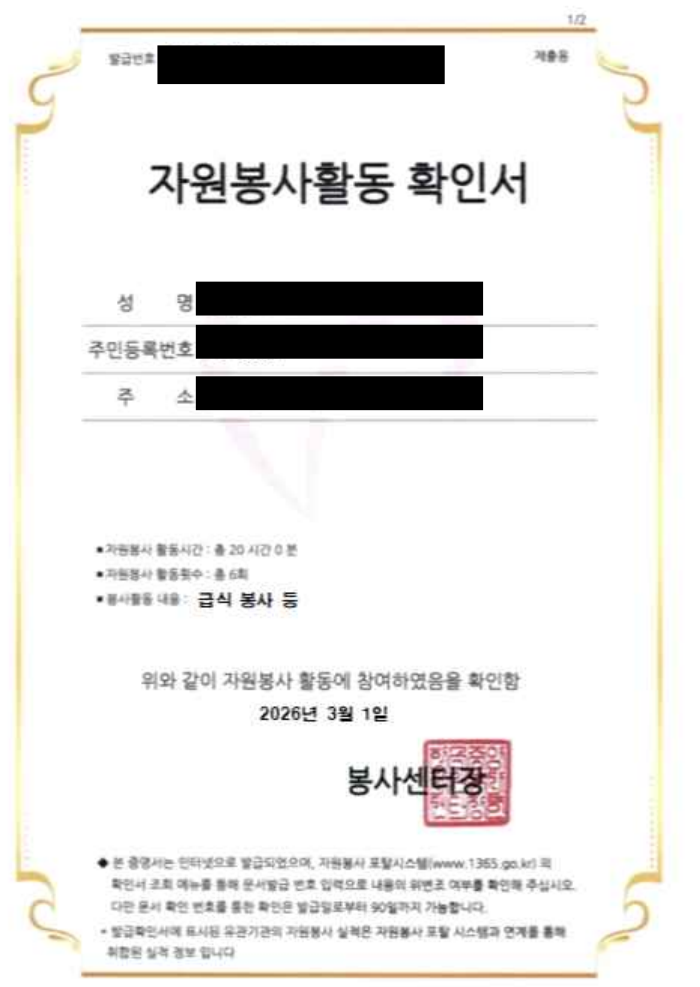
1. 봉사활동 내역(최대 3건 기재)

일련번호	봉사 기관	봉사활동 내용	봉사 시간	봉사 기간
1				
2				
3				

2. 주요 활동 내용

봉사활동 내역 및 노력
※ 학생 본인이 재학 중 수행한 주요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 3가지 이내로 기술 -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등 기술
봉사활동 중 배우고 느낀 점
※ 위에서 기술한 주요 사회공헌 노력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

3. 봉사활동 내역 증빙(블라인드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첨부)

증빙 서류					
※ '<서식4> 기타 증빙서류(원본)'에 제출한 증빙내역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요망 ※ 3. 봉사활동 내역 증빙은 최대 3P 이내를 권장(기타 증빙서류(원본) 최대 분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출) - <서식4> 기타 증빙서류(원본) 양식에서 본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지역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 주관기관(발행처)이 소속 학교일 경우는 발행처 블라인드 처리 필수 - 증빙자료 블라인드 처리 예시는 아래를 참고 □ 봉사활동 일련번호-1에 대한 증빙					
서류명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증빙번호	6
증빙목적	봉사활동 1	발행처	봉사센터장	발행년도	2026
					
□ 봉사활동 일련번호-2에 대한 증빙 □ 봉사활동 일련번호-3에 대한 증빙					

<서식4>

기타 증빙서류(원본)

※ 본 설명박스는 작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함으로 제출 시 삭제요망

<작성자 유의사항>

- 하단 <증빙 서류 제출 목록>표를 포함하여 **11장 이내로 주요 과학 활동, 기타 과학 활동, 봉사활동 순으로 증빙**
 - 증빙되지 않은 활동은 심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항목별 최저 점수 권고 가능
 - <서식1> ~ <서식3> 본문에 기술하지 않은 증빙서류는 심사평가 대상에서 제외
(예시: 과학 활동에 기술하지 않은 관련 없는 수상자료 등)
 - <서식4>기타 증빙서류(원본)에 첨부한 증빙서류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서식1> ~ <서식3> 본문 뒤에 첨부
- 수상자료는 상장 및 메달, 연구 및 발표 자료 등 순으로 증빙
- 논문, 연구자료, 저서, 발표 자료 등 페이지가 다수인 증빙은 표지, 목차, 주요내용, 결론 등 중요 페이지 일부만 제출(본인 성명 및 소속 정보 등이 기재된 부분에 **형광펜 표시** 등 요망)
- 생활기록부가 증빙서류인 경우, 증빙 목적별로 관련 페이지만 재제출하여 증빙
 - 기재된 내용 중 관련 수상 및 활동 증빙 문구에 식별 가능하도록 **반드시 형광펜 표시** 등 요망
- 가능한 공식적으로 발급한 증빙자료를 고화질로 스캔 요망
 - 잘못된 예시: 컴퓨터 화면에서 수상 내역 캡처, 식별 불가능한 휴대폰 사진 제출, 직인이 없는 사본 서류 등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1장에 1P)하여 제출**하며, **모아찍기 등(1장에 2~4P) 불가(제출 시 제출양식 미비로 간주)**
- 과학활동, 봉사활동 이외의 필요한 기타 증빙(동등학력자 증빙, 아포스티유 등)은 별도의 PDF로 각각 변환 후 증빙서류 제출 목록과 함께 하나의 알집 파일로 압축하여 기타 증빙에 업로드
 - 예시: ①기타 증빙서류, ②해외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③학교 소개서 → 1개의 알집 파일로 압축
- ※ ②와 ③은 기타 증빙서류 페이지 한도(11p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하단 표 기입 대상 X
- 단, 필요 증빙(동등학력자 증빙, 아포스티유 등) 외 기타 증빙서류는 본 양식을 준수하여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양식 미준수 시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작성요령(파란색 글귀는 안내사항으로 모두 삭제 후 제출)

<증빙 서류 제출 목록>

증빙 번호	서류명	발행처	발행년도	증빙목적	페이지수
1	국제물리올림피아드 1위 상장	00기관	2019	주요과학활동1	1
2	교내 물리연구 대회 우수상 상장	교내	2020	주요과학활동2	1
3	교내 물리연구 대회 메달	교내	2020	주요과학활동2	1
6	경북과학참여캠프 실험보고서(주요과정)	경북도청	2020	기타과학활동1	2
7	전국 과학토론대회 우수상(생활기록부 26P)	교내	2021	기타과학활동2	1
8	소망양로원 봉사(VMS)	VMS	2021	봉사활동1	4
9	교내 쓰레기줍기 봉사(생활기록부 50P)	교내	2021	봉사활동2	2
10					
11					

서류명	국제물리올림피아드 1위 상장			증빙번호	1
증빙목적	주요과학활동 1	발행처	00기관	발행년도	2020

- 화질 저하 등 증빙의 내용이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 미제출로 간주할 수 있음
- 폰트 크기 축소, 자간 조정, 용지 여백 수정 등을 통해 1 페이지에 여러장 삽입 불가

· 예시: 봉사활동2 관련 연속된 동일봉사 증빙 생활기록부 중 총 2P 제출
제목(서류명, 증빙번호, 증빙목적 등)은 모든 페이지 동일하게 기입, 각 1P에 1장씩 삽입



1P에 증빙 1장 삽입O



1P에 여러 증빙 삽입X

예시

서류명	교내 스포레기습기 봉사(생활기록부)	증빙번호	9
증빙목적	봉사활동2	발행처	교내
발행년도	2021	발행년도	2020

학년	학기	봉사활동	봉사시간	봉사내용	봉사장소	봉사일자
고1	1학기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10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2020.10.10 ~ 2020.10.20
고1	2학기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10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2020.10.20 ~ 2020.10.30
고2	1학기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10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2020.10.10 ~ 2020.10.20
고2	2학기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10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2020.10.20 ~ 2020.10.30
고3	1학기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10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2020.10.10 ~ 2020.10.20
고3	2학기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10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스포츠레기습기 봉사	2020.10.20 ~ 2020.10.30

- 생활기록부 중 동일한 봉사내용만 형광펜 표시하여 같은 제목(증빙번호 등)으로 각 1P에 1장씩 삽입O

참고 4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1학년 학업성적 보유자)

※ 1page 이내 작성(파란색 글귀는 안내사항으로 모두 삭제 후 제출)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고등학교 (소재지)		진학 대학	

상기 신청인은 0000년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대학 입학 예정
 (허가)자로서 창의적이고 과학기술분야에 잠재력이 풍부하여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소속:

직위:

추천인: **학교장 또는 교육감 성명** (직인 또는 서명)

한국과학기술재단 귀중

참고 5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3학년)

※ 1page 이내 작성(파란색 글귀는 안내사항으로 모두 삭제 후 제출)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공	
추천사유	

상기 신청인은 0000년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대학 재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과학기술분야에 잠재력이 풍부하여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소속:

직위:

추천인: 지도교수 성명 (직인 또는 서명)

한국과학기술재단 귀중

참고 6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학업성적 미보유자]

<서식1>

학업성적 미보유 확인서[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학예정대학 (1순위)	

본인은 0000년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대학 입학 예정(허가)자로서
고등학교에 미진학 또는 중퇴하여 학업성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이후 고등학교 미진학 및 중퇴 사실이 허위로 밝혀 질 경우
장학생 자격이 취소되며, 수혜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장학재단 귀중

<서식3>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9.25.>

제 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합격증번호 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직인

참고 7

학력확인서(북한이탈주민용 예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28.>

발행연도-제 호

학력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국한 날짜	
이수 학력	시작일	종료일	학교	학년	비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참고 8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1. 해외고등학교 학력검증 확인 관련 서류제출 안내

□ 대통령과학장학생 지원자는 해외 고등학교에서 발급한 졸업 및 성적 (재학) 증명 서류에 대해 아래의 가~다 중 가능한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고교 졸업 및 성적 증명) 서류

나.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고교 졸업 및 성적 증명) 서류

- 영사확인이 불가할 경우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주한 해당국 영사확인도 가능함

다. 중국 내 학력취득자의 경우 중국교육부 학력 및 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및 학위 인증보고서(www.cdgdc.edu.cn)

2. 참고사항: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관련 안내

가.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임

- 1)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동안 재외공관의 영사가 현지문서를 확인하는 ‘영사확인’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 발생
- 2)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를 발급함
- 3) 아포스티유가 부착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www.hcch.net)의 Apostille Section에서 협약국가 및 국가별 관련기관 정보 등의 최신자료 조회 가능

< 현지통화 지급 신청 시 현지 지급계좌 정보 >

※ 모든 정보는 영문으로 작성

※ 미국: SWIFT, ABA 모두 작성, 영국: IBAN, ABA 모두 작성

1. 수취인 거래은행 정보

- 은행명(Bank Name):
- 은행 Code(SWIFT, ABA 등):
 - 예) 미국 → ABA No: FW + 9 자리 숫자로 구성
 - 영국 → IBAN Code: GB + 20 자리로 구성
 - 캐나다 → CPA No: CC + 9 자리 숫자로 구성
- 은행주소: 최소한 도시명, 주명, 국가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수취인계좌번호:

2. 수취인 관련 정보

- 수취인 성명:
- 수취인 여권번호(Passport No.):
- 수취인 주소(현지 주소):

※ 본 신청서는 해외장학생용이며, 국내장학생은 별도의 신청단계 없음

2000년 0학기 학업(거주) 계획서

선정연도	2000년도		장학생 구분	대통령과학장학생(해외)		
성명			법정생년월일	년	월	일
대학명	전공(학과)			학년		
해당학기 학사일정	(학기 시작일)	년	월	일		
	(학기 종료일)	년	월	일		
학사일정 증빙	학교 홈페이지 공지 등 공식 문서에서 학기 시작일 및 학기 종료일이 포함된 학사일정 발췌하여 이미지로 본 셀에 삽입					
학기 중 거주 국가	예시)한국, 미국, 영국 / 한국 및 미국 / 한국 및 영국					
학기 중 거주 계획	예시)학기 중 한국 30일 체류 / 학기 중 한국 및 미국 오갈 예정					
출국(예정)일	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귀국(예정)일	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본인은 위 학업(거주) 계획서의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체재비 차액 등을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직전학기 출입국사실증명서(이전학기 출국일 ~ 현재)

정부24에서 발급 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삽입
직전 수혜학기에 해외 체류했음을 출입국 기록으로 증빙

※ 본 보고서는 해외장학생용이며, 국내장학생은 제외함.

<서식2>

2000년도 0학기 진도보고서

선정연도	20 년도 (제 0회)	장학생 구분	해외장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교)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년
연락처(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 해외 현지주소 및 연락처도 추가하여 작성		
직전학기 성적(GPA)	점 (점 만점 기준) * Cumulative GPA가 아닌 Term GPA 기준으로 직전학기 성적 작성		
(학위과정 중 해당학기 추진된 학업내용,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 - 본문 내용 글자크기 12point 이하, 2 Page 이상 - 소속학교 홈페이지의 이수과목 설명을 단순히 복사 및 붙여넣기 지양			

※ 본 보고서는 해외장학생용이며, 국내장학생은 제외함.

※ 학기말 학업성적표 첨부

<서식3>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선정연도	2000년도(제 0회)	장학생 구분	해외 / 국내 장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교)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년
연락처(자택)	주소: (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 해외 현지주소 및 연락처도 추가하여 작성		
변경사항 개요			
휴학	기 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 유		
교환	기 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 유		
전공 및 학교 변경	내 용	당 초	변 경
	사 유		
본인은 상기와 같이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소속 학교 재적증명서(휴학 확인서) 및 관련 증명서 각 1부			

※ 본 보고서는 해외장학생의 학업변경 및 국내장학생의 소속학교 변경 신청용임.

<서식4>

대통령과학장학생 종료보고서

선정연도	2000년도(제 0회)	장학생 구분	해외장학생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학 위 기 간	20 . . ~ 20 . .		
졸업논문명			
소속기관(졸업 후)	[기관명] [부서(과)명]		
장래계획(최소 5년간)	·학위 취득 - 국내 ☐ , 유학 ☐ - 석사 ☐ , 박사 ☐ , 박사후과정 ☐ - 전공 분야: ·취업 - 기업명() 취업분야()		
연락처	·학교(근무처): ·숙소(주택): ·E-mail:		
※ 향후 자세한 진로 계획 및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술 (필요시 별지 사용)			

※ 본 보고서는 해외장학생용이며, 국내장학생은 제외함.

※ 대학 졸업증명서 및 학업성적증명서 첨부

<서식5>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포기 확인서

선정연도	2000년도	장학생 구분	국내장학생(), 해외장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교)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번
연락처(자택)	주소: (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포기 사유			
포기연도/ 학기			
본인은 「이공계 지원법」 개정 (25.6.21. 시행)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위의 사유로 인해 장학금 지원을 포기합니다. 이후 장학금 포기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6>

대통령 과학장학생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평가서 본문에 도표, 사진 등 실적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
- 최소 2장 이상으로 작성
- 작성완료한 보고서는 반드시 본인 서명 및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PDF파일 형태로 제출('22년도 선발자부터 적용)
- 지도교수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학과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선정연도	2000년도	장학생 구분	국내장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교)		학부(계열)/학과	

■ 이공계열 활동내역 (장학생 작성)

1. 전공관련 활동실적

- ※ 선발 이후 논문, 수상 실적 등 이공계열 관련 활동을 자유롭게 기술
- ※ 실적의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전공 및 진로와의 연계성, 참여도 및 기여도 등 기술
- ※ 소속학교 홈페이지의 이수과목 설명을 단순히 복사 및 붙여넣기 지양

<작성예시>

○ 「논문」 실적의 경우 : 아래 표를 포함하여 기재

게재연월일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수준
	저자 (논문표기순)	교신저자 (지도교수)	저자명수				
년 월 일	(저자 이름을 순서대로 모두 기재 본인 이름은 굵게 밑줄 표시)						

※ 수준 : 발표된 학술지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
(예시 : SCI(Impact Factor를 연도와 함께 기재 요망, 기재예 : Nature Materials誌의 경우 SCI IF: 23.13(2009)), SCIE, SSCI, A&HCI,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후보) 등을 기재)

○ 「수상」 실적의 경우 : 아래 표를 포함하여 기재

수상연월일	참가자			대회명	수상명	국내외 구분	수준
	단독/공동 여부	본인역할	팀원수				
년 월 일		(리더/팀원 등)	(단독일 경우 미기재)				

※ 수상명 : 대통령상, 교육부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명 기재

※ 수준 : 대회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
(예시 : 대회 규모(전체 참가자 수 등), 예선 및 본선 여부, 상금을 받은 경우 상금액수 기재)

2. 사회공헌활동

※선발 이후 기부,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기타 활동

※ 선발 이후 본인의 전공 및 진로 등과 관련된 활동을 자유롭게 기술

4. 향후 계획

※ 이공계열 전공자로서의 장래의 진로와 포부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지도교수 확인 (지도교수 작성)

성 명	
소속(대학교)	
학부(계열)/학과	
직위	※ 직위 및 학과는 학과장(○○학과), 지도교수(○○학과) 등으로 기재

해당 학생은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지난 학위과정 중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학업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참고 10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 금융거래 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학자금 지원 효과성 분석 관련 조사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에 대한 사항을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 관리 업무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처리, 조사, 환수 및 강제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교육비 면제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국가 장학사업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 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차상위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 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재외동포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 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써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본인확인 목적의 연계정보(CI) 생성 ▶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처리, 조사, 환수 및 강제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u>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u>,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 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교육비 면제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국가 장학사업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 정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사업 수혜에 관한 정보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 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인 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 처리 및 학자금지원 사후관리 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 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건축물 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 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 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 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장학금 환수 등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11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 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의 반환은 학적변동 등 대학으로부터 환급되는 반환분을 의미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분 상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조항 적용

■ 학자금 목적 외 사용

-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프로그램 참가 포기,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 하게 될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에 반환)
- 교육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님 에도 수혜한 경우

※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타 장학금 수혜 가능

나. 국가장학금 임의 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 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 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 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누적)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습비’)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 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 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4.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 동시수혜 불가 동의

본인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과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을 동일학기에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일 학기에 본인의 소속 학점은행제 학적과 본인의 소속 대학 학적으로 동시에 재단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한 개 학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학적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구분	안내
생활비 대출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실행
기등록자 대출(등록금)	자비로 대학(원)에 선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학자금 범위>

구분	안내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7.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2) 신청인이 ‘나’ 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가’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락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8. ‘부정청구 등’ 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8.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마. 통지

-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9. 고객 개인정보 최신화 관련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 되도록 재단(개인정보처리자)이 개명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변경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장학금 신청 시 준수사항

본인은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금 신청 시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장학금 신청 시 준수사항>

본인은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인으로서 장학금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규 장학금 및 계속장학금 신청 시 신청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한국 장학재단에서 제시하는 양식 및 작성요령, 작성 분량 등을 준수할 것이며, 미준수 시 해당 내용은 심사에 일절 반영되지 않으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인은 신규 장학금 신청 시 과학활동내역서, 인재성장계획서, 봉사활동기술서에는 본인의 소속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단어, 문구,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것이며, 미준수 시 감점 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3. 본인은 신규 장학금 신청 시 기타 증빙서류 내 본인 성명 및 소속 정보 등이 기재된 부분에 형광펜 표시 등 처리 후 제출할 것이며, 미준수 시 감점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4. 신규 장학금 및 계속장학금 신청 시 제출 파일 오류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파일이 올바르게 저장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하겠습니다.
5. 해외장학생의 경우, 계속장학금 신청 시 직전학기 성적 및 등록금, 기수혜 장학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이며, 신청 정보 허위 기재 및 오기재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6. 본인은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 변경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 할 것이며, 연락 불가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6. 본인은 장학금 신청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책임지겠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1.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 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본인은 국가장학금(재단 장학금 포함) 신청인으로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는 전 기간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가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단, 주민등록상 연계정보가 없거나 해외이주신고자, 이민 출국자 신청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4. 본인은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국가장학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6. 대통령과학장학금
 - 가. 본인은 입학 이후 재학기간 동안 계속지원기준 누적 2회 미달(3학년 선발 유형의 경우 1회 미달)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 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각종 보고서(진도보고서, 종료보고서, 이공계열 활동 내역, 봉사활동 내역서 등)를 성실히 작성 및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 다. 본인은 재단의 대통령과학장학생 성장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로 선·후배 장학생 간 교류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2. 연구장려금 환수 등에 대한 동의(2012년부터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가우수 장학생(이공계)으로 신규 선발된 학생에 해당)

본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한 때에는 연구장려금의 중지·환수 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내용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용)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3.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기준

- ① 국내 1학년 신규 선발자의 경우 계속장학생 지원기준을 1회 미달하는 경우 지급 1회 중단, 누적 2회 시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 계속장학생 중 타 장학금 수혜 승인자*의 경우에도 동일 지원기준 적용
 * 10년 선발된 명예장학생에만 해당
- ② 국내 3학년 신규 선발자의 경우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1회 미달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 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 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학과, 초등교육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자퇴,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단, 질병·상해·천재지변 및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단, '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 장학생 자격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장학생 준수사항(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등) 위반 등으로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장학생 자격 박탈이 결정된 경우
 - ▶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장학생 자격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등 반환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4.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 ① 자퇴,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단, 질병·상해·천재지변 및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②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하여 '12년 선정 장학생부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장학생
-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단,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예과·한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장학생은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상환 약정서를 제출하고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여야 함

- ① 일시상환: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
 - ② 분할상환: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 * 90일 이상 미상환 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 환수자 지정

□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① 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②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 ③ 그 밖에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